

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5. 2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5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5. 21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과장 정형진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배양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명칭과 위치(안 제2조)

- 사하구종합복지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12-278번지에 둔다.
-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 113-12번지에 둔다.

○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(안 제5조)

-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생활보호대상자
 - 사회복지시설수용자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위탁운영(안 제6조)